

【 1 】 제40회의회(임시회)회기결정의 건

제 의 년 월 일 : 1995. 9. 5

제 의 자 : 의 장

제안이유

제40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· 회 기 : 1995. 9. 14 ~ 9. 26 (13일간)

【 2 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발 의 년 월 일 : 1995. 9. 6

발 의 자 : 朴榮遠의원외 2인

주 문

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양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.

(95. 9. 18 ~ 9. 21)

제안이유

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양주군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